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 당 사 자				
이용자 (갑)	성 명		등 급 (인정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
	주 소			
	수 급 자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8% 감경대상자 <input type="checkbox"/> 12% 감경대상자 <input type="checkbox"/> 20% 감경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 설 명	검단메디컬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대표자성명	최명희	연 락 처	032-568-9992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79, 7층 (제이원검단메디컬프라자)		
	입금 계좌	수협은행(검단메디컬요양원) : 1010-1993-3908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 락 처	:
	주 소			

제1조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기로 한다.(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국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을의 예금계좌 또는 카드결재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 등급	2 등급	3~5 등급
요양	여	노인요양시설(1일 기준)		90,450	83,910	79,240
비급여	상급침실	100,000(월)	이/미용료	-	식재료비 (1일)	11,400
	이용료		기 타	-		
	간 식 비 (1일)	1,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육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감경대상자는 감경적용률에 따름)

※ 일반 입소자가 등급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등급인정 일자부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시설의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또한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갑’의 권리

1.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사생활의 보장과 비밀유지를 보장받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종교 활동 및 개인 활동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4.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존경을 받을 권리
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7. 급여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을 열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8. 기타 시설 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 ‘병’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3. 시설 내에 개인 청결의 의무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④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표준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⑤ 신원인수인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의무
 5. 수급자 병원 입원 시, 간병 및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의 의무
- ⑥ 입소자의 책임
-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증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5조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갑’이 촉탁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는 ‘갑’ 또는 ‘병’은 진료비 20%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임종 및 장례】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양실의 배정】‘갑’의 요양실(생활방)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의 선천적 결함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 및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 후송 도중 사망하였을 때
6. ‘갑’이 의사표시 및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7. ‘제 3자의 귀책사유’ 등 ‘을’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8.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의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갑’(또는 ‘병’)은 ‘을’의 시설 종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갑’ 또는 ‘병’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갑”	이 용 자		인
	“을”	시 설 대 표	최명희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분과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서명
--	----

1. 우리 시설은 어르신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드리며 어떤 이유로든 금품이나 사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종사자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시설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빼내오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입소 대상자 및 보호자는 검단메디컬요양원 입소계약을 체결하며, 검단메디컬요양원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그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들었으며, 설명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 합니다.

입소자 성명	(인)	입소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보호자 성명	(인)	입소자와 관계	
연락처			

검단메디컬요양원